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도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6
----------	------

발의연월일 : 2021. 11. 22.

발의의원 : 서도원 의원, 김정태 의원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규칙 근거를 개정하고, 기록표결 도입 및 회의록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 책임성을 강화하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본식 한자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상위법 근거 개정(안 제1조, 안 제14조, 안 제70조, 안 제82조)
- 나. 표결방법 개정(안 제41조)
- 다. 회의록 작성방법 등 개정(안 제48조)
- 다.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사항 신설(안 제52조의 2, 제52조의 3)
- 마. 상위법령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신설(안 제83조의 2)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1조”를 “제83조”로 하고,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의 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로 하며, “의회의”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로 한다.

제2조 중 “의회의원”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의장”을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사무국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부의장”을 “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4항 중 “사고로 인하여”를 각각 “사고 때문에”로 한다.

제8조의2 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제63조제1항”을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의사일정의 미료안건”을 “의사일정의 미완료안건”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후단 중 “특별위원회(위원회라 한다)” 를 “특별위원회” 로 한다.

제22조의2 제2항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한다.

제26조 중 “기타의”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범위안에서” 를 “범위에서” 로 하고,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미치거가” 를 “미치거나” 로 한다.

제32조 본문 중 “의제의” 를 “의제에” 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범위안에서” 를 “범위에서” 로 한다.

제39조 후단 중 “투표에 의하여” 를 “투표의 방법으로” 로 한다.

제40조 중 “표결에 있어서” 를 “표결할 때” 로 한다.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 을 “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 ① 표결할 때에는 기명투표에 따른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 의하여” 를 “각 호에 따라” 로 한다.

제45조제1항제9호 중 “부의안건” 을 “회의에 부친 안건”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46조제1항 본문 중 “사무국장” 을 “의회사무국장” 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전단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8조제2항 및 제3항 중 “의하여” 를 각각 “따라” 로 한다.

제49조 중 “사무국장” 을 “의회사무국장” 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본문 중 “심사함에 있어서” 를 “심사할 경우” 로 한다.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등) ① 의장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 라 한다)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심사 등을 위하여 본 회의의 의결로 구성한 특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를 각하할 경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 회의에 부쳐 처리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52조의3(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가 수리되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의장

명의로 발의된 주민청구조례안은 이 규칙에 따른 의원 발의 조례안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는 그 의결로 해당 주민조례청구의 대표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청구 취지(대표자의 질의 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의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주민청구조례안을 본회의 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와 그 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를 해당 주민조례청구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6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58조제3항 중 “가할 수”를 “보태거나 더하여 할 수”로 한다.

제59조제1항제10호 중 “본회의에 부의할”을 “본회의에 부칠”이라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0조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1조제1항 전단 중 “본회의에 부의한다”를 “본회의에 부친다”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부의할 수”를 “부칠 수”로 한다.

제65조 전단 중 “지체없이”를 “늦추지 말고 바로”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한다”를 “본회의에 부친다”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경유하여”를 “거쳐”로 한다.

제66조의2 제2항 중 “범위 내에서” 를 “범위에서”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규정에 의한” 을 “규정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요시간” 을 “질문을 끝마치는데 걸리는 시간” 으로 하고, “송부하여야” 를 “그 질문요지서를 보내야”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체없이” 를 “늦추지 말고 바로” 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지체없이” 를 “늦추지 말고 바로” 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제79조” 를 “제91조” 로 하고, “의거” 를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 사고에 의하여” 를 “그 밖에 사고 때문에” 로 한다.

제71조제3항 후단 중 “본 회의에 부의하여야” 를 “본회의에 부쳐야” 로 한다.

제74조제2호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75조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하며, “의하여” 를 “따라” 로 한다.

제79조제1항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80조제5호 및 제8호 중 “기타” 를 각각 “그 밖에” 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제86조” 를 “제98조” 로 하고, 같은 조제2항 후단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83조” 를 “제95조” 로 하고, “의거” 를 “따라” 로 하며, 같은 조제5항 중 “본

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를 “본회의에 바로 부칠 수”로 한다.

제83조제1항 전단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동조”를 “같은 조”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친 때도 또한 같다.

제83조제2항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동조”를 “같은 조”로 한다.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의회에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교수
2. 전직 지방의회의원·공무원
3. 그 밖에 지방자치 등 관련 분야 전문가

⑥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⑦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였을 때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었을 때

⑧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자문위원회 위원장 또는 재적 자문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로 개최한다.

⑨ 회의는 재적 자문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자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6조제1항 중 “지체없이”를 “늦추지 말고 바로”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여”를 “본회의에 부쳐”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u>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u> 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의회의</u>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83조 ----- <u>따라</u> <u>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u> ----- ----- ----- -- <u>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u> 의---- ----- --.
제2조(등록) <u>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u> 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조(등록) <u>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u> ----- -----.
제3조(의석배정) <u>의원의 의석은 의장이</u>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다만,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전의 의석은 <u>사무국장이</u>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출신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3조(의석배정) ---- <u>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u> ----- ----- ----- <u>의회사무국장</u> ----- ----- ----- -----.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u>부의장</u> 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4조(개회식) ----- ----- ----- <u>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u> -----.
제7조(청가 및 결석) ①의원이 <u>사고로 인하여</u>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u>사고</u> <u>때문에</u> ----- -----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제8조의2(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① (생략)

② 후보자 등록을 마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지며, 당해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은 중복하여 이루어질 수 없다.

③~④ (생략)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략)

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사고 때문에 -----

-----.

⑤~⑥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해당 -----
----, 해당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규정에 따른 -----

--제72조제1항-----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사일정의 미완료안건)

---.

제20조(의안의 회부) ①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후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의원의 동의를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한다.

②~⑤ (생략)

제22조의2(조례안 예고)

① (생략)

② 제1항에 의하여 예고를 할 때에는 의장의 명의로 하되, 의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의 2(자유발언) ①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회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의안의 회부) ①-----

----- 특별위원회 -----

--.

②~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조례안 예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라 -----

-----.

제26조(의안의 정리) -----

----- 그 밖의 -----

-----.

제28조의 2(자유발언) ①

범위안에서 -----
----- 그 밖에 -----

-----.

②~③ (생략)

제31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생략)

제32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의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생략)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9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0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 미치거나 -----

-----.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발언회수의 제한) -----
-의제에 -----

-----.

제33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범위에서 -----
-----.

제39조(표결의 참가)

----- 투표의 방법으로 -----

-----.

제40조(의사변경의 금지) -- 표결
할 때 ----- .

제41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제43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 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3. (생략)

② (생략)

제45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8. (생략)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13. (생략)

14.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

제41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기명투표에 따른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② (삭제)

③ -----

----- 제1항

④ (삭제)

제43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
----- 각
호에 따라 -----.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회의록의 작성) ① -----
-----.

1.~8. (현행과 같음)

9. 회의에 부친 안건-----

10.~13. (현행과 같음)

14. 그 밖에 -----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략)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회의록에는 의장·의장을 대리한 부의장·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날인한다.

② (생략)

제4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의회사무국장-----

-----.

② (생략)

4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그 밖에 -----

-----.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따라 -----

-----.

③----- 따라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
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⑤ (생략)

제49조(의사일정과 개최일시) 위원
회의 의사일정과 개최일시는 위원
장이 사무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2조(위원회의 심사) ①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
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
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
고 질의·토론 축조 심사를 거쳐 표
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
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신 설>

-----.

④~⑤ (현행과 같음)

제49조(의사일정과 개최일시)

----- 의회사무국장
-----.

제52조(위원회의 심사) ①
----- 심사할 경우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2조의2(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등) ① 의장이 「주민조례발
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
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청구(이하 “주민조
례청구”라 한다)의 수리 또는 각하
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심
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한 특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신 설>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를 각하할 경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 회의에 부쳐 처리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52조의3(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가 수리되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의장 명의로 발의된 주민청구조례안은 이 규칙에 따른 의원 발의조례안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는 그 의결로 해당 주민조례청구의 대표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청구취지(대표자의 질의 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의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주민청구조례안을 본회의 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와 그 조례안에

<신 설>

제56조(공청회) ①(생략)

②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전·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④ (생략)

제57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
회는 안전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
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②~③ (생략)

제58조(위원장의 보고)

①~② (생략)

③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
다.

제59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
항을 기재한다.

1.~9. (생략)

10.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

대해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를 해당 주민조례청구의 대표자
에게 알려야 한다.

**제53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
언할 수 있다.

제56조(공청회) ①(현행과 같음)

②

----- 그 밖에
-----.

③~④ (현행과 같음)

제57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 그 밖에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8조(위원장의 보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보태거나 더하여 할 수 ----.

제59조(위원회 회의록) ①

-----.

1.~9. (생략)

10.----- 본회의

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③ (생략)

제60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
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
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
회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61조(예산안등 심의) ①의회에 예
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군수로부터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
은 후 의장은 이의 심사기간을 정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하
예결위원회 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
한다. 의회에 따라 위원정수가 특
히 적어 예결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본
회의에서 바로 심의할 수 있다.

제63조(예산안 등의 의결) ①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보고가
있는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생략)

에 부칠 -----

11.그 밖에 -----

②~③ (현행과 같음)

제60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 출 금 지)

----- 그 밖의 -----

-----.

제61조(예산안등 심의) ①

----- 본회의에 부친다.

----- .

제63조(예산안 등의 의결) ①

----- 부칠 수 ---.

② (현행과 같음)

제65조(결산 등의 심사) 의회에 결산과 기금결산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 의회에 따라 의원 정수가 특히 적어 예결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산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바로 본회의에서 심사할 수 있다.

제66조(군수 등의 출석요구)

- ① (생략)
-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③~④ (생략)

제66조의2(군정에 대한 질문)

- ① (생략)
- ② 군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병행하되,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각 의원별로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제65조(결산 등의 심사)

 ----- 늦추지 말고 바로

 ----- 본회의에 부친다.

 -----.

제66조(군수 등의 출석요구)

- ① (현행과 같음)
- ② ----- 거쳐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66조의2(군정에 대한 질문)

- ① (현행과 같음)
- ② -----

 ----- 범위에서
 ----- .
- ③ ----- 규정에 따른

- ④ -----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 시간 72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제4항의 질문요지서에 대한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해당의원에게 이를 지체없이 배부하여야 한다.

제67조(군수에 대한 서면질문) ①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②~③ (생략)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피심위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질문을 끝마치는데 걸리는 시간

----- 그 질문요지서를 보내야 ---.

⑤

----- 늦추지 말고 바로 -----.

제67조(군수에 대한 서면질문) ①

----- 늦추지 말고 바로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 제91조

-----따라 -----

-----.

②

그 밖에 사고 때문에

-----.

제7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② (생략)

③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74조(회의의 질서 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5. (생략)

6.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75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78조(방청석의 교부 및 기재)

① (생략)

②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④ (생략)

제79조(방청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본회의에 부쳐야 ---.

④ (현행과 같음)

제74조(회의의 질서 유지)

-----.

1. (현행과 같음)

2.-----
----- 그 밖의

3.~5. (현행과 같음)

6.그 밖에 -----

제75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 그 밖에

-----.

제78조(방청석의 교부 및 기재)

①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의
----- 따라

-----.

③~④ (현행과 같음)

제79조(방청의 제한) ①

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
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②~③ (생략)

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
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
다.

1.~4. (생략)

5.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6.~7. (생략)

8.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
해하는 행위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
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
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 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
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
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
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
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의 규정

-----.

1.~3. (현행과 같음)

4.그 ----- 밖에

②~③ (현행과 같음)

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1.~4. (생략)

5.--- 그 밖에 -----

6.~7. (생략)

8.그 밖에 -----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제98조-----

-----.

②-----

----- 따라 -----
-----.

③

----- 제95조

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위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생략)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제한) ① 제8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킨 또한 같다.

②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 설>

----- 따라

-----.

④ (현행과 같음)

⑤

----- 본회의에 바로 부칠 수
-----.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제한) ① -----
----- 따른 -----

----- 같은 조

-----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친 때도 또한 같다.

② ----- 따른
----- 같은 조

-----.

제83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

성·운영) ① 의회에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교수
2. 전직 지방의회의원·공무원
3. 그 밖에 지방자치 등 관련 분야 전문가

⑥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

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
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
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⑦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였을 때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었을 때

⑧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자문위원
회 위원장 또는 재적 자문위원 3분
의 1 이상의 소집요구로 개최한다.

⑨ 회의는 재적 자문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자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

제86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u>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u>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생략)	<u>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u> 제86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 ----- -- <u>늦추지 말고 바로 본회의에 부</u> <u>쳐</u> -----. ② (생략)
--	--

□ 지방자치법(시행 2022.1.13.) (2021.1.12., 전부개정)

제72조(의사정족수) 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제57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선거
2.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제62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
4.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5.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91조(의원의 자격심사)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은 모욕을 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시행 2022.1.13.) (2021.10.19., 제정)

제11조(이의신청 등)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